

제 461 호

1974. 10. 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고 시

- 제 139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3
- 제 140 호 : 금액표시상불권발령및 상환사부취규요령 3
- 제 142 호 :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특히 지구정비지구) 지적고시 17
- 제 144 호 : 도시계획사업 (광강) 실시계획인가 17

◎공 고

- 제 173 호 : 1974년서울특별시상수인구조사실시 18
- 제 187 호 :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9
- 제 188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활생산지정업체대제지정 19
- 제 189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자및 주소변경
공고 2
- 제 190 호 : 중구보건소장공인게작공고 20
- 제 192 호 : 주택개발계획발사업복아현제 1, 아현제 2 일부
서빙고재 1, 고척구역건축계획승인공고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0	신림동				150-46	대	209	표자동 69-5	최종배	
21	"				150-51	대	18	청운동 45-3	윤상원	
22	"				152	전	114	이태원동 124-7	허금면	
23	"				153-1	대	4	청파동 2가 13	고완전	
24	"				154-5	"	20	전농동 617-2	이희봉	
25	"				154-6	"	20	신림동 352	김이순	
26	"				154-7	"	20	"	이병실	
27	"				154-1	"	17	필동 3가 47-6	정성규	
28	"				154-10	"	20			
29	"				154-9	"	43	전농동 500-6	최세익	
30	"				154-8	"	50	신림동 396-32	이건우	
31	"				154-3	"	42	방파동 568	이용완	
32	"				154-11	"	82	신림동 171	전환수	
33	"				155-6	"	16	신길동 95-3	김기윤	
34	"				155-2	"	107			
35	"				155-4	"	207	신길동 95-3	김기윤	
36	"				155-1	"	206	한강로 2가 159	정상진	
37	"				155-8	"	55	신창동 56-20	윤해룡	
38	"				145-5	"	440	신림동 41-28	공영석	
39	"				145-3	"	451	"	"	
40	"				150-56	"	13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308 호(74.9.13) 로 지정고시된 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 의 가.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1.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도면표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도면생략)

1974. 9. 25.

서울특별시장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상업지역	서대문구성동 15 번지일대 중로구신문로 2 가 89 번지일대	13,200	

별첨: (도면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금액표시 상품권발행 및 상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4. 9. 2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40 호

금액표시상품권발행 및 상환사무취급요령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상품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1 조의

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표시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내의 영업소에서 공중에게 매출하여 상품권 소지자에게 상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품권법 시행령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발행신청 및 등록승인)

①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 상품권 발행등록을 받아야
한다. (별첨서식 제1호)

1. 상품권발행등록신청서(별지제 2 호서식) 1부
2. 상품권 견본 1부
3. 재무계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부
4. 공약서사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발행예정액 30/100) 1부

② 2개 이상의 시도 단위행정구역에 유통되는 상품권 발행신청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재무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제 3 호서식)

③ 상품권은 법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기재사항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쇄하여야 한다.

1. 지질: 훼손되지 아니하는 특수 용지를 사용할것.
2. 색채: 권면금액의 종류별로 다르게 인쇄할것.
3. 등록별표시: 권면에 아래 규격의 표식을 인쇄 또는 날인할것 (별지제 4 호서식)
4. 특수표시: 발행업소에서 유일하

게 식별할 수 있는 특수표시를 할것.

5. 소표: 소표자의 선택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10 메 내외의 소표를 부착할것.
6. 발행일자: 반드시 「서기 년 월 일」 발행이라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것.
7. 유효기간: 상법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시효 5 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효기간을 권면에 기재할 수 없다.

8. 인지: 인지세법 제1조 1항 8 호에 의거 인지를 첨부할것.

④ 발행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케 하여 발행업소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권함의 발행등록은 발행등록대장(별지제 5 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상품권 견본에 등록필인(별지제 6 호서식)을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등록필인이 날인된 상품권 견본은 매출장소 및 상환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⑦ 신규발행등록을 필한 업소는 미상환액이 자본금의 한도권 초과하지

같은 범위내에서 매월 5일까지 추가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추석 15일전과 12월 15일까지)동무를 경신하여야 한다.

⑤상품권발행동무 승인액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발행업소의 사무관리) ①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 권면가액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 상품권 발행년월일, 발행번호, 상환내용 상환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품권 원면 및 소표에도 상환년월일별로 소인하여야 한다.

제4조(분기별공탁) ①상품권 발행자는 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공탁을 한 상품권 발행자는 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때에는 법제4조 제2항의 공탁서 사본첨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제7호)

③공탁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공탁금의 반환승인) ①상품권

발행자가 시장으로 부터 공탁금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승인을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공탁금 반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제1조의3 및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발행계정액의 $\frac{30}{100}$)의 반환신청은 발행승인액 전부를 발급 매출하고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발행후 미사회액의 총이상)을 공탁하여 전조에 의한 신고를 한뒤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반환신청은 매월말 현재의 상환실적을 기준으로 월1회 신청하되 최저공탁 금액은 미상환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분기말 기준일 현재로는 미상환액의 총이상을 예치 유지하고 잔여공탁금은 반환 승인할 수 있다.

④시장이 상품권 발행자로 부터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발행 및 화수상품권 매수 및 상품권 폴리장부를 검토하여 사실과 일치하면 별지제9호서식의 반환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판일로 부터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

제 6 조 (원 보) 상품권 발행자는 법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서식 제 10 호) 를 일월 15 일까지 시장에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상환의무) ① 상품권 발행자는 법제 12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친절하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소지자가 잔액가액 이하의 물품을 선호하여 상환시의 발행차액이 5% 이내일 때에는 이를 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발행자가 영업장소 및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회사의 합병 재산사유가 발생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상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이를 시장에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수상품권의 관리) ① 상품권 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상품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상품권 관리대장과 원본발행번호별로 소액부표를 수납 적당한 여백에 회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잔액가액 전액을 상환한 때에 원본권면에 최종회수 인자를 명기하여 소액부표 첨부 6개월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을 경과하여 회수상품권을 파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파기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 (서식 제 12 호) 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73 년도 상품권 발행 등록을 필한 자로서 미상환액이 있는 업소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무부에 월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제 1호)

시 율 특 별 시

(75-7641)

상 공 1311

1974

수 신

제 목 상품권발행등록승인

1. 귀하가 신청하신 상품권발행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
니다.

가. 승 인 내 용

권	면	액	매	수	금	액	비	고

2. 상품권을 상환하지 될 귀산하산전 및 영업소전다 '상
품권 상환 전결봉사' 라는 전관을 제정케하고 상품권 상환의무를 철거
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계법규 1부 끝

시 율 특 별 시 장

(서식제 2 호)

○ ○ 회 사

수 신 서울특별시
 관 조 상정 과장
 계 목 상품권발행공부신청

1. 상품권법제 1 조의 3 제 1 항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2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거 금액표시상품권을 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등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행신청내용

기 허 발 행 사 항					금 회 발 행 신 청			
권 면	액	등록누계액	발행누계액	상환누계액	미상환누계액	매 수	금 액	공 탁 액
계								

나. 취급분류 (독립전문점에 한함)

- 첨부 : 1. 상품권절본각 2 매
 2. 재무제표 2 부 (내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동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 영업감찰제시 부
 5. 공탁서 자본 (원본제시)

1974. . . .

○ ○ 회 사

대 표

(인)

(서시제 3 호)

○ ○ 회 사

수 신 서울특별시
계 목 상품권발행 등록추천신청

1. 상품권법시행령제 4 조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품권 발행을 등록요건 별첨서류 첨부 추천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행예정액

나. 발행 및 상환장소

소	계	기	상	호	비	고

- 첨부 : 1. 상품권 전본 각 2매
 2. 재무제표 2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 영업감찰제시

197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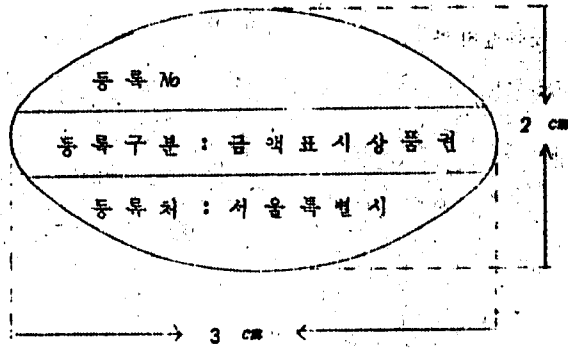
(전화)

○ ○ 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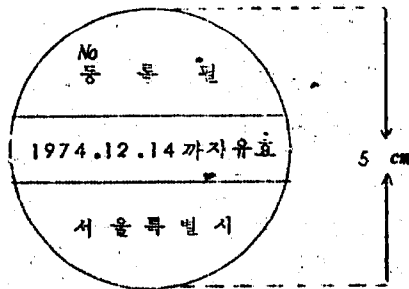
대 표

(인)

(서식제 4호)



(서식제 5호)



(시식 제 6 호)

등록번호	등록일	영업감환 번호	발행자	발행 및 상환장소	등록종류	금액	공약액	결 제		비고
			주소, 성명					계장	과장	

(서식제 7 호)

회 사

분류기호

전화 ()

1974

수 신 서울특별시감

참 조 상정과장

계 목 공탁신고

1. 상품권법 제 4 조제 1 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40 호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공 탁 액

전본등록번호	발행누적액	미수잔액	변경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비 고

나.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일 때에 한함)

공탁번호	공탁일	액면금액	단위당내역	시세환산액	비 고

주첨 : 1. 공탁서 사본 (원본지참)

회 사 대표

㉠

(서시계 8호)

회사

분류기호 호 (전화) 197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상정 과장

계 목 공탁물 반환승인신청

1. 상습권법 제 5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계 140호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합니다.

가. 신청내용 (발행시 공탁금)

공탁일	공탁번호	공탁액	발행등록 승인액	발행 누계액	미상환액	금회산환 신청액	비 고

나.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일부에 한함)

종 류	기 호	번 호	권 면 액	매 수	공탁가액	비 고

회사

대표



(서식제 9호)

서울특별시

분류기호

197

수신

제목 공탁물 반환승인

1. 상습권법 제 5 조 규정에 의거 귀하가 제출하신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 내역

- 1) 공탁번호
- 2) 공탁년월일
- 3) 공탁액
- 4) 금회반환승인액
- 5)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의 경우)

종 류	기 호	번 호	액 수	권 전 액	비 고

서울특별시장

(서시제 10호)

○ ○ 회 사

주 신 서울특별시

197

제 목 금액표시 상환권 발행보고

1. 상환권법 제 10 조제 1 항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197 . . . 권적 발행상황을 보고합
니다.

공부관

양 수 권면의	발 행 액				상 환 액				미상환누계		양 수 (상환액외)
	발행 필수	발행 금액	상환 필수	상환 금액	미상환 필수	미상환 금액	미상환 필수	미상환 금액	필수	금액	

○ ○ 회 사

대표

☉

(서식제 11호)

○ ○ 회 사

분류기호 전화 () 197 . . .

수 신 서울특별시

제 목 회수상품권 파기승인신청

1.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 제 8.조제 2항에 의거 회수상
 품권에 대하여 파기코자 다음과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권 면 액	회수매수	파기매수	파기할상품권의총가액	비 고

전본등록번호

회 사

대표이사

①

◎ 서울특별시고시제 142 호

도시계획 (재개발구역및특
정가구정비지구)지적고시

1. 도시계획 (재개발구역및특정가구정
비지구)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도시계획법 제 13조및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4. 9. 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 결정 (년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도림지구	도림, 내수, 당주, 신문로 1가, 세종로각 일부	130,000 평	
변 경	"	도림, 내수, 당주, 신문로 1가, 세종로 각 일부	111,674 평	

나. 도시계획 (특정가구정비지구) 결정 (신설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세종로지구	도림, 당주, 신문로 1가, 세종로각 일부	18,126 평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
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도시계획사업 (광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광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다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
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9. .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 판
악구신림동

2) 사업의종류및 명칭 : 서울대학교
정문앞 광장공사

3) 사업의규모 : L=300 B=120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4.10.1 - 74.12.31.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 : 별
첨조사

7)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조사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73 호

1974년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조사 실시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 1일을 기
하여 예년과 같이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인구의 지
역별 변동과 성별, 연령별 인구동태

를 파악하여 도시계획 환경위생교육
주택상수도등 살기좋은 새서울건설
및 유선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시
정제반 정책의 기본자료로 삼것입니
다. 이제 본조사의 실시에 즈음하
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사기준시점 : 1974년 10월 1일 0시

2. 조사기간 : 1974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3.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전역

4.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전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및 일
반의국민

5. 조사원 : 동직원

6. 조사방법 : 전가구 방내타계식조사

7. 법적근거 : 통계법 및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조사 시행조례

1974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공고제 187 호

환지에정지년경지정 공고

1. 망우추가 및 화양추가 토지구획
정리지구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지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 및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에정지물 지정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수익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나 미완료 또는 다른사유로 인하여 환지에정지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용 수익을 하게 된다.

3.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동대문, 성동)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4. 이 공고에 따른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수명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9. 2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88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

상시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9.

서울특별시장

1. 대체지정업체

지정취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325	울지섬유공업사	동대문구회경동 68-3	이시목	에타	325	울지섬유공업사	동대문구이문동 250-1	이시목	에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및주소변경 공고

주소변경을 서울특별시 단체감독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 9 . .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자및
 가. 변 경 사 항

서울특별시장

조 합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시연식품공업 협 동 조 합	정 기 영	김 태 운	서울시종로구 내수동 10의 2	서울시서대문구 중정로 1가 86의 3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0 호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장공인개작공고

자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 9 . .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장의 공인을 개

서울특별시장

1. 서체규격 - 한글 서체 2.1 센치 정방형
2. 공 인 명 -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장인
3. 공인모형 - 정 방 형
4. 사용개시일 - 74.10. 1
5. 공인의인형

인 형

개 작 공 인	구 공 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2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복합연계 1. 아
현계 2 일부, 서빙고세 1, 고척
구역건축계획승인공고

1. 당사가 시행중인 1974년도 복
아원세 2, 아현세 2 일부, 서빙고세 1
고척구역의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을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제 1 항, 선
속법제 33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
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고한다.
2.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는 단독
주택 (16 평 - 24 평) 15 개형과 공동
주택 (당층 2 호 - 3 층 4 호) 13 개형 등
모두 28 개형으로서 이미 해당구역
주택과이 건축설계도서를 비치하였
으며 전장 50 평 (15 평) 이하의 건

설부 표준설계도서도 활용할수있다.

1974. 9. 2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3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진흥
산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정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요령 제 3
조, 제 4 조 및 제 6 조의 규정의 하
위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진흥
산 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원기준업
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9. 26

서울특별시장

단위:호

1. 지정업체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종류	비고
902	신성일처리공업사	손오식	영등포구고려동 152	금형공구	
454	동진 공업사	김재갑	성동구성수 1가 67-53	볼트	
503	자생당철유공업사	조중근	성북하일곡동 66-5	메리야스, 내외	
316	법양프라스틱홀링산업사	김윤덕	동대문구민복동 408-5	인공합성석유 PVC	
457	삼철합동 (주)	신용표	성동 구의동 244-1	두, 하석복	

2. 지정취소입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1011	대우석유공업사	김우중	도봉마아동 762-57	에타	폐업
520	대진통상(주)	김순환	성북하월곡동 90	봉세품	6개월이상휴업
501	동아공업사	강용	성북성북동 1가 34	귀금속가공	무단전출
808	동양산업사	김한영	용산이태원동 212	아크릭원단	"
813	K. B Kim 상회	김국배	" 9-3	신사복	"
815	동양복장산업사	박의영	용산구문배동 7-10	하의	"
804	삼진섬유(주)	손진수	" 18-2	베리야스	수출실적없음
306	동서화학산업사	박문화	동대문구신실동 13	검도구	경영부실취소요청
311	동진산업사	오상동	동대문구전농동 43-5	에타	장기휴업

◎서울특별시공고제 195호

도시계획시설(광장)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445호(73.11.13)로

고시된 당시 판악구소재 서울대학교

정문앞광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

확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 건설행

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99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의위치 : 판악구 신림동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서울대학교

정문앞 광장공사

3. 사업의규모 : = 300 = 120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74. 10. 1-74.

12. 31

6.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

소성명 :

별첨조서. 끝

		로 지 조 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신림동				138-81	대	7	삼청동 147-31	한영수		
2	"				145-9	"	402	영등포동 7가 155	신덕문		
3	"				145-10	"	197	신림동 41-48	공영석		
4	"				146-8	"	62	구로동 740	기연환		
5	"				146-9	"	116	상봉동 390-17	이규철		
6	"				150-111	"	2				
7	"				150-112	"	19	합정동 378-17	조동근		
8	"				150-113	"	50	신림동 427-150	이화집		
9	"				150-114	"	84	홍석동 104-62	우영수		
10	"				150-116	"	3	송인동 70-40	김창욱		
11	"				150-118	"	2	명륜동 3가 136-2	안경세		
12	"				150-119	"	15	연희동 44-3	성창현		
13	"				150-120	"	56	연희동 400-54	이계순		
14	"				150-121	"	130	석북동 270	진영석		
15	"				산 32-5	임	1,665	영등포동 2가 287	김기창		
16	"				산 10-8	임	36	영등포동 270	박용성		
17	"				145-6	대	120	신림동 41-48	공영석		
18	"				145-7	대	5.9	"	"		
19	"				150-68	"	48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0	신림동				150-46	대	209	표자동 69-5	최종배	
21	"				150-51	대	18	청운동 45-3	윤상원	
22	"				152	전	114	이태원동 124-7	허금면	
23	"				153-1	대	4	청파동 2가 13	고완전	
24	"				154-5	"	20	전동동 617-2	이희봉	
25	"				154-6	"	20	신림동 352	김이순	
26	"				154-7	"	20	"	이병실	
27	"				154-1	"	17	필동 3가 47-6	정성규	
28	"				154-10	"	20			
29	"				154-9	"	43	전동동 500-6	최세익	
30	"				154-8	"	50	신림동 396-32	이건우	
31	"				154-3	"	42	방파동 568	이용완	
32	"				154-11	"	82	신림동 171	전환수	
33	"				155-6	"	16	신길동 95-3	김기윤	
34	"				155-2	"	107			
35	"				155-4	"	207	신길동 95-3	김기윤	
36	"				155-1	"	206	한강로 2가 159	정상진	
37	"				155-8	"	55	신창동 56-20	윤해룡	
38	"				145-5	"	440	신림동 41-28	공영석	
39	"				145-3	"	451	"	"	
40	"				150-56	"	131			

○ 서울특별시공고제 196 호

환경예정지계획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시흥및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
지에 대한 환경예정지 계획을 다
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제 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
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 및 관할
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서류출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것이나 미수명되는 토지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4. 9. 2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 1. 사업명: 신림, 신림수가, 시흥및
김포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지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봉천동, 사당동일부지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
동, 동촌동 일부지역
- 3. 변경필적수: 38 필지
- 4. 변경조서및도면: 별첨(생략: 서울
특별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끝.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
제 13 호

공계경제채용시험부정응사자
자 격 정 지

74.9.22 시행 제 3 회 5 급을류 지방
공무원공계경제채용시험에 있어 부정
행위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 조
1항및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공고한다.

1974. 9. 27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부정행위자

직 별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 계	주소
행정직 (5급)	4534번	박 종 인	47.12.24	경기도김포군현곡면육정리 27	과 동

2. 조치사항

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나. 74.9.22 부터 79.9.21 까지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자격을 상실함.



○ 서울특별시예규제 275 호

교통경찰관선발적성심사제
운 용 지 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선발순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전무경찰관으로 기용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관기를 색신하여 친선하고 참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교통경찰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통경찰관의 선발기준 및 적성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교통외근경찰관(싸이카요원을 포함한다)

과 동요원이 되고자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자격) 교통경찰관은 본지침에 정하는 적성심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통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이어야 한다.

제 4 조 (적성기준) 교통경찰관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 고교졸업이상자
2. 연령 : 40 세이하의 자
3. 체격 : 1) 신장 170 cm 이상
2) 체중 60 kg
3) 시력 양안 1.0 이상 (교정시력 포함)
- 4)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
4. 근무성적 :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봉사간에 청벌 강직한 자
5. 경력 : 경찰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찰채직 2 년이상자

제 5 조 (적성심사위원회) ① 교통경찰관의 선발을 위한 제 6 조의 적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국에 적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위원장은 경찰국장이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경무국장, 기획국장, 감찰국장, 교통국장, 안전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적성심사) 적성심사는 교통분야근무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경찰관 적성심사표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당년도에 교통경찰관 자질소모율을 감안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한다.

제7조(합격증교부) 전조의 적성심사 합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 전보시 할 용라도록 한다.

제8조(교육) 적성심사합격자는 경찰대학부설교통학교에서 소정의 교통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별도계획수립 실시)

제9조(배치순위작성) 전조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경찰관 배치순위를 작성한다.

제10조(배치) ①교통경찰관결원시는

전조의 배치순위명부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공정하게 배치한다.

②초임 교통경찰관으로 임명된 자는 1개월전습근무후 정상교통근무를 실시하게 한다.

제11조(보고) 경찰서장은 교통경찰관 결원보충 배치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5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통국장겸유 경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원보충요청) 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교통경찰관 결원보충을 위한 적성심사합격자의 외래의 결원보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국 원사에게 그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 ①교통경찰관으로 배치된후 적성기준에 걸리지않거나 발생하거나 민원비위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시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적성심사합격자가 배치전에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통경찰관으로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분보장) 교통경찰관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청렴결백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 대내적으로 신망이 돈독한 자는 인원부

서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로 교체하지 아니한다. ①(시험일) 본 지침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15 조 (인사기록) 교통경찰관의 직 성 및 교육사항은 인사기록에 기재한다. ②(폐지에규) 1964.12.8 서울특별시 예규제 33조 교통경찰관선발기준 및 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서식제 1 호> 교통경찰관직성심사표

심 사 요 령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1	2	3	4	5
관 정	가							
	부							
<u>적 성 기 준</u>								
소 속				계 급			성 명	
학 력	(최종출신교)			년 령	년 월 일생 세			
신 체	신 장	체 중	시 력	용 모 부 장				
	cm	kg	과 우	우 량 가				
근무성적	징계처분	침령, 강직성		경 력	기본교육기관		근무년한	
	유 무	우 량 가			년 월 기생		년 월	
가정환경	부양가족	생 활 능 력						
	명	동산	원 부동산	원 계	원			
비 고								

<서식제 2호>

교통경찰관 적성심사합격증

소속

계급

성명

상기자는 197 년 월 제 의 서울특별시 경찰

국시험 교통경찰관 적성심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경찰국장

○ 서울특별시예규제 276 호

중소기업육성자금수용업체
사 후 관 리 지 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육성
실시책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이하 "수용업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후관리대상) 이 지침에
의한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시
책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용한 업체에 대하여 정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육성
2. 중소기업의 구조근대화 조성
가. 전문화 계열화
나. 기업합병
다. 시설의 근대화
3. 토산품 산업육성
4. 영세기업 육성
5. 기타 상공부장관 및 시장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제 3 조 (사후관리의 책임) 각 구청
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수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야 한다.

제 4 조 (사후관리의 시기와 중기)

사후관리는 용자취급 은행장에 귀
하여 자금대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수용업체가 그 자금
의 상환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 5 조 (카드의 작성) 구청장은 제
2 조에 규정한 시책별 수용업체별
로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후관리) ① 각 구청장은 수
용업체에 대하여 년 4회(분기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업체
에 대하여 서류 또는 보고서 등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각 구청장은 사후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에는 지체없이 시장경제 보고하여야
한다.

1. 육성결과 대기업으로 전환하였
거나 계속 육성의 필요성이 없

다고 인정될 때

2. 6개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로

판단될 때

3. 자금을 목적외에 유용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공장소재지, 대표자, 업체명등을
변경하고도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 주공업체의 소재가 불명할 때

6. 기타 행정관청의 관리상의 지
시, 명령, 보고서 제출 등에 불
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단
이 경우에는 사전에 3회이상의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주공업체는 관한 구
청장에게 매월 별지 2호서식에 의
한 사업계획대실치보고서를 매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적용예) 중소기업육성시책별
로 이미 시달한 사후관리 요령중
이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74.9.

24.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시에규제 216호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
다.

사 령

◎ 1974. 9. 16

법무담당 지방행정 김명수
관 실 수사보시보.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3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74. 9. 20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이홍윤
교 수 부

보건사회부 복지연금국 수리

조사과 근무를 명함.

◎1974. 9.21

서대문수도사업소(직위해제중) 지방행정기
 용산수도사업소(직위해제중) 지방행정기
 서울부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서울부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기
 중구보건소(직위해제중) 지방행정기

한구희
 김성준
 김재춘
 정진구
 신용부

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장 교수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장 교수부 근무를 명함.
 총무과(제1부서장실)과장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단에 처함.

하수과 지방행정사 최병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74.9.21-12.21까지) 휴직을 명함.

◎1974. 9.24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사 이재원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수탁행정과 수탁직장에 보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이후직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도봉구 청소과장에 보함.

기회담당관실 지방행정사 현종화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성동구 청소과장에 보함.

◎1974. 9.22

농정과 수산기원보서보 김창열

수산기원보에 임함.

농정과 근무를 명함.

4호봉을 급함.

성동구 청소과장에 보함.

◎1974. 9.23

철도청 전자행정사무관 윤우길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비서(4급상당)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시감실)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청 소 과 장 사무관 김 의 석

성동구 산업과장에 포함.

도봉구 지방행정 청 소 과 장 사무관 유 경 상

성동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 민원봉사실장 사무관 김 응 석

도봉구 사회과장에 포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 회 과 장 사무관 김 경 기

서대문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 민원봉사실장 사무관 신 용 섭

서대문구 사회과장에 포함.

품 부 원 지방행정 교 육 원 교 수 부 사 무 관 채 중 식

감사담당관실 감사 1 계장에 포함.

비상계획관실 지방서기관 성 중 식

서기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구미공업단지관리소 사업과장에 포함.

공업단지관리청 서기관 유 중 호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1974. 9. 24

대 통 명

새 지 과 지방행정 감 동 식

지방공무원법 제 62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 9. 25

포 장 과 지방토목 박 정 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관 약 구 지방행정 유 지 철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4. 9. 26

도 봉 구 지방행정 김 중 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7.19

발령 제 483 호) 징계처분 (견책)

을 동일자로 취소함.

지

◎ 1974. 9. 27

철 하 철 본 부 지 방 김 광 수

운 령 담 당 관 부 이 사 관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p>◎1974.10.1</p>	<p>전 창 설</p>	<p>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 영 우</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지방수의사보시보에 임함.</p>
<p>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박 규 용</p>	<p>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노 경 찬</p>
<p>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p>
	<p>박 신 임</p>	<p>1호봉을 급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안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정 일 환</p>
<p>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p>
	<p>김 말 숙</p>	<p>1호봉을 급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죽도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p>

서 울 목 별 시 장